2024년 02월 08일 18시57분 37조 이 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·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.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【중요확인사항】(별지1)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즈탠인대차표주계얀서

□보증금 있는 월세 □전세 □원세

|   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ᆸ선세                    | ┗월세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임대인(  | )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차인(  | )은 아래외           | 과 같이 임       | 대차 계약을                 | : 체결한다            |
| [임차주택의 표시]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소 재 지   | (도로명주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토 지   |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면적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mi                |
| 건 물   | 구조•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면적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mi                |
| 임차할부분   |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                      | 정확히 기재  | 면적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mi                |
| 계약의종류   | □ 신규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□ 합의에 의현         | 한 재계약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□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/11 -1 - 0 π  | *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811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~ 보증   |                  | 원, <b>차임</b> | : 월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|
|   | 납 국세·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순위 확정  | 경일사 현황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□ <b>없음</b><br>(임대인 서명 또는   | :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<b>해당 없음</b><br>(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@</b>         | )            | 확정일자                   | 부여란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1 개어 ※ 주탁    | 임대차계약서를 제              | 배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     |
| 중개사 세부 확인사 않은 물건의 권리사   | .l항 '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도                 | 당한 그 에 등 서울(공개대증을<br>당지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'<br>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|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    | = 고시타 업수     | 를 완료한 경우(<br> 를 신청할 필요 | 게는 별노도 왁성일人       |
| [жоы и д.]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[계약내용]<br>제1조(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)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 1001 10         |
| 보증금   |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원정(∀  | 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금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,   | 계약시에 지불히         | <br>I고 영수함.  | <br>. 영수자 (            | 인)                |
| 중 도 금   | 금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(₩ )은  | 년_               | 월_           | 일에                     | 지불하며              |
| 잔 금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(₩ )은  | 년 _              | 월_           | 일에                     | 지불한다              |
| 차임(월세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은 매월 일에 지불한   | · ·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)                 |
| 관리비   | (정액인 경우)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원정( <del>∀</del> | ∀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)                 |
| (정액이 아닌 경우)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임대차기간)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일까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임차인에게 인도하고,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년월일까지로 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<b>제3조(입주 전 수리)</b>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,   | . 시설 🗆 🗆 없음 🗆 🤉                       | 이으(人기하 내요: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\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/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수리 완료 시기 : □ 잔금지급 기일인년월일까지 □ 기타 ( )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 : □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관료 시기 : □ 구디미글<br>한 경우 : □ 기타(        | 음사인이 음대인에게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)<br>)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임차주택의 사용·관리·수선)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할 수 없으며,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,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다만,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,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임대인부담   |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)                 |
| 임차인부담   | ( 예컨대, 임차인의 고의<br>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        | ·과실에 기한 파손, 전구 등<br>으로 해석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상의 간단한 수        | 선, 소모품       | 교체 비용은 민               | 법 제623조, 판례상<br>) |

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